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천하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97
----------	-------

발의연월일 : 2025. 10. 24.

발 의 자 : 천하람 · 권영세 · 김상훈
김재섭 · 박민규 · 박성민
이준석 · 이주영 · 전용기
최은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인세법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요건을 규정하면서,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90% 이상을 소유한 경우를 연결지배요건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때 의결권없는 주식과 지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결납세제도의 본질인 실질적 지배력과 무관한 요소까지 포함시키는 결과를 야기함. 특히, 의결권 없는 주식은 단순 투자수단에 불과하여 경영지배와 무관함에도 이를 분모에 포함함으로써, 지배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90%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회계기준(K-IFRS), 상법 및 주요국 제도에서는 지배력 판단시 의결권 있는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행 규정은 국제적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됨.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과 지분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연결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지분 기준으로만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지배력 중심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의2).

법률 제 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2가목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결지배 판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보유비율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10의2. ----- ----- ----- ----- ----- ----- --.
가. <u>의결권 없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할 것</u>	가. <삭 제>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